

제 호

원본증명기관지정서

기관명 :

대표자 :

주 소 :

제공서비스 :

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지식재산처장

직인